

심 사 보 고 서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	---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5
----------	-----

2015. 12. 15.(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1월 20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2월 3일

-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조운희)

가. 제안사유

○ 매입을 진행 중인 구)중앙초등학교에 기존 교사동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하여
의회청사로 활용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의회청사 증축》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8(문화동 4번지 구)중앙초)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증축규모 : 3,080㎡ (지하1층, 지상4층)
- 사 업 비 : 90억원(도비)
 - ※ 총사업비 155억원(증축 90, 리모델링 65)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에서 매입을 하는 구)중앙초등학교를 의회청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만이 의회 독립청사가 없는 점과 청주 도심지에 위치한 구)중앙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직원의 편의를 위해 증축 전이라도 현재 폐교 상태로 남아 있는 구)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심미관 보호와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전절차의 이행과 종합적인 계획의 부실 등에 따른 문제가 있음
- 구)중앙초 및 인근 부지 활용방안과 도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 등이 포함된 구체적·종합적인 도의회 청사 마련 계획 수립 필요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29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11월 20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295 호

제출연월일 : 2015년11월20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신설과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실, 회의실 등 업무공간과 주차장 등의 절대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중앙초등학교의 매입을 진행 중으로,
- 구)중앙초등학교 활용을 위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교사동 리모델링 + 증축」하여 의회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확정되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의회청사 증축》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8(문화동 4번지 구)중앙초)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증축규모 : 3,080㎡(지하1층, 지상 4층)
- 사 업 비 : 90억원(도비) ※ 총사업비 155억원(증축 90, 리모델링 65)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16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매 입 교 환 기 타	계	토지	1	8,225	2,056,250				1	8,225	2,056,250
		건물	2	3,292	7,573,485	1	3,080	9,000,000	3	6,372	16,573,485
		기타									
	매 입	토지	1	8,225	2,056,250				1	8,225	2,056,250
		건물	1	992	3,700,000				1	992	3,700,000
		기타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1	2,300	3,873,485	1	3,080	9,000,000	2	5,380	12,873,485
		기타									
분 별	계	토지	1	8,621.9	1,348,285				1	8,621.9	1,348,285
		건물									
		기타									
	매 각	토지	1	8,621.9	1,348,285				1	8,621.9	1,348,285
		건물									
		기타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건	3,080	9,000,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8	3,080	9,000,000	2017	의회청사 증축	충청북도지사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p> <p>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